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1.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가. 통상우편물

(1) 최대용적

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만, 어느 길이나 6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소형포장우편물

○ 가로, 세로, 두께의 합이 35㎝ 미만(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90cm 까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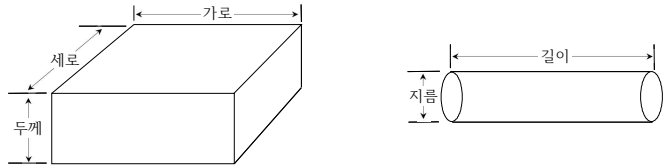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미만(다만, 서적·달력·다이어리 우편물은 1m 까지 허용)

(2) 최소용적

○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 세로 9㎝

○ 원통형으로 된 것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단, 길이는 14㎝ 이상)

< 통상우편물의 용적 “예시” >



(3) 중 량

○ 최소 2g ~ 최대 6,000g

○ 다만, 정기간행물, 서적, 달력, 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요금감액을 받지 않는 서적과 달력, 다이어리는 800g, 국내특급은 30kg이 최대 중량임

나. 소포우편물

(1) 최대 용적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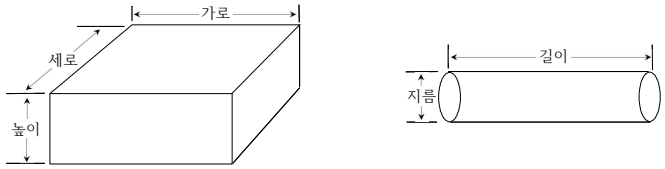
○ 다만, 어느 변이나 1m를 초과할 수 없음

(2) 최소 용적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단, 가로는 17㎝이상, 세로는 12㎝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 (단, 지름은 3.5㎝ 이상, 길이는 17㎝ 이상)

< 소포우편물의 용적 “예시” >



(3) 중 량 : 30kg 이내이어야 함

(4)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우편물의 포장

가.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모양·용적·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나. 우편자루 배달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 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따로 고시하는 통상우편물 규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라. 다음 물품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 분	포 장 방 법
1. 칼·기타 이에 유사한 것	적당한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할 것
2. 액체·액화하기 쉬운 물질	안전누출방지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봉하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상자에 넣고, 만일 용기가 부서지더라도 완전히 누출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솜, 톱밥 기타 부드러운 것으로 충분히 싸고 고루 다져 넣을 것
3.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과 생병원체 및 생병원체를 포유하거나 생병원체가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1) 전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 보기 쉬운곳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할 것 2) 우편물 외부에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할 것 3) 독약·극약·독물 및 극물은 이를 2가지 종류로 함께 포장하지 말 것
4. 산꿀벌등 일반적으로 혐오성이 없는 살아 있는 동물	튼튼한 병, 상자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그 탈출 및 배설물의 누출을 방지할 장치를 할 것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